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현 (외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외동포청장이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보호에 업무상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재외동포청장을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재외동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5.8.18.~2025.9.29.)

대통령령 제 호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재외동포청장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 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) ① (생 략) 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1. ~ 13. (생 략)	제2조(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 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0의2. 재외동포청장</u> 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919